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22
----------	-------

발의연월일 : 2025. 7. 25.

발 의 자 : 최민희 · 김우영 · 김 현
박민규 · 이원택 · 이훈기
조계원 · 채현일 · 최혁진
황정아 · 허성무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산업 생태계에 원활하게 공급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의 정의 및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의 생성과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향상과”를 “향상을 도모하며, 인공지능 등 신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통하여”로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것을”을 “것과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란 인공지능을 훈련·검증·시험하기 위하여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가공·정제한 것을 말한다.

제7조제3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의2.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의 우선 생성·제공 범위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의3.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의 생성·제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의 정합성, 정제도, 메타데이터 구성 등 적정한 품질수준

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를 생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 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 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 용을 통한 삶의 질 <u>향상</u> 과 국 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u>향상을 도모</u> <u>하며, 인공지능 등 신기술 개발</u> <u>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통하여</u>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 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 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 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 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것</u> 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 ----- ----- ----- <u>것과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u> <u>이터를</u> -----.

가. ~ 라. (생 략) 3. · 4. (생 략) <u><신 설></u>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① · ② (생 략)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u><신 설></u> <u><신 설></u> 6. ~ 11. (생 략) ④ · ⑤ (생 략)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생 략) <u><신 설></u>	가. ~ 라.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5.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란 인공지능을 훈련·검증·시험하기 위하여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가공·정제한 것을 말한다.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의 우선 생성·제공 범위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의3.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의 생성·제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 11.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의 정합성, 정
--	--

② ~ ④ (생략)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 ③ (생략) <u><신설></u> ④ (생략)	<u>제도, 메타데이터 구성 등 적절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를 생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u> <u>⑤ (현행 제4항과 같음)</u>
--	---